

8. 建設勤勞者의 雇用改善等에 관한 法律 施行令制定(案)立法豫告

勞動部公告 第1997-16號 1997. 4. 17

주요골자

- 가.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건설협회, 건설공제조합, 한국전기공사협회, 전기통신공사협회, 또는 관련 공제조합 등으로 써 위 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업주의 1/2 이상이 가입한 단체로 함.
- 나.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계약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퇴직공제증지를 구입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,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,000원 이상 5,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도록 함.
- 다.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,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48개월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공제회는 공제계약의 체결,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, 공제증지의 판매,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건설관련공제조합·사업주단체,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등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개정이유

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,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·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(법률 제5249호)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